남부내륙철도 市·郡 행정협의회 해산 승인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0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· 제안이유

○ 남부내륙철도 市·郡 행정협의회의 각지차체별 존치여부 의견 수렴결과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『지방자치법』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 해산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· 행정협의회 개요

○ 협의회 명칭 : 『남부내륙철도추진 市·郡 행정협의회』
○ 근 거 : 『지방자치법』 제152조
○ 구성현황 : 9개 시·군
- 경상북도 : 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
- 경상남도 : 합천군, 진주시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

· 추진상황

○ 2016.04.01 ~ 04. 15 :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및 규정 협의
○ 2016. 12. 15 : 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규약 및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 고시
※ 공동부담금 총금액 : 90,000천원 (성주군 : 10,000천원)
○ 2019. 04. 08 :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문의
☞ 존치 여·부는 시·군별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
○ 2019. 04. 19 : 우리군 운영방안 회신
- 남부내륙철도 市·郡 행정협의회 존치

· 행정협의회 해산결정

○ 9개 지자체의 의견수렴 결과
- 존치의견 4개 시·군 : 성주군, 고령군, 진주시, 거제시
- 해산의견 5개 시·군 : 김천시, 합천군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
☞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설립목적 달성
☞ 과반수 이상의 의견(5개 지자체 해산의견)에 따라 해산결정

· 향후 추진계획

○ 협의회 해산 의회 승인 ⇒ 고시
(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규약 및 공공부담금 집행 규정 폐지)

○ 비영리단체법인 승인 취소 ⇒ 국세청

○ 공동부담금(90,000천원) 정산

해산관련 공문

인쇄 : 도지완 / 안전건설과 (2019-08-19 14:13:16)

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

김 천 시

시민중심 행복김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**『남부내륙철도 추진 시·군행정협의회』 해산 결정 통지**

1. 귀 시·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2. 지난 2016.12.26.일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「**남부내륙철도 추진 市·郡 행정협의회**」가 해산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고 협의회 공동부담금 정산을 위한 **통장사본을 첨부**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현황

1) 일 시 : 2019. 4. 3(수) 14:00
2) 장 소 : 김천시청 2층 회의실
3) 참석대상 : 실무과장(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행정협의회원)
4) 협의사항 : 행정협의회 구성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전반

나. 행정협의회 해산 결정사유

1) 2019.01.26. :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(국가균형발전위원회)
 ☞ 행정협의회 설립 목적 달성
2) 2019.04.03. : 실무진 협의에 의한 존치여·부 수합결과(존치 4, **해산 5**)
3) 회장임기 완료 후(2016.12.26. ~ 2018.12.26.) 차기 회장 희망 시·군 全無

다.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

1) 협의회 해산 지방의회 승인 → 고시
2) 비영리단체법인 승인취소 → 국세청
3) 공동부담금 정산 → 행정협의회(시·군).

붙 임 : 공동부담금 잔액현황 1부. 끝.

인쇄 : 도지원 / 안전건설과 (2019-08-19 14:13:16)

김 천 시 장

수신자 성주군수(안전건설과장), 고령군수(건설과장), 합천군수(건설과장), 의령군수(전략사업담당관), 진주시장(도시계획과장), 고성군수(미래산업과장), 통영시장(교통과장), 거제시장(지정혁신담당관)

도로철도주무관	도로철도계장	도로교통과장	건설안전국장	전결 2019. 8. 2.
강영수	최재명	김창현	김병진	

협조자

시행 도로교통과-66194 (2019. 8. 6.) 접수 안전건설과-24473 (2019. 8. 6.)

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-1, (신음동, 김천시청) / www.gimcheon.go.kr

전화번호 420-6335 팩스번호 420-6069 / gasgun95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주민등록번호! 법령근거 없이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!

문서관리카드 안전건설과-24473 2/2

구성 및 운영규약 폐지

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
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
[성주군 고시 제2016-73호 2016. 12. 15]

제1조 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,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되고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“남부내륙철도사업(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.)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기 위하여, 본 노선이 통과하는 市·郡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노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협의회는 명칭은 『남부내륙철도추진 市·郡 행정협의회』(이하 협의회라 한다.) 라 칭한다.

제3조 (협의회 구성)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, 합천군, 의령군, 진주시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로 한다.

제4조 (사무소 위치)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5조 (처리사무)
①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협의
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·건의나 대외적인 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
③ 기타 본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결정사항

제6조 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분과(총무, 대외협력, 홍보) 8명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.
1. 총무분과는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2. 대외협력분과는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나 관련기관 방문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3. 홍보분과는 언론사 보도지원 및 대·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회장) ① 회장은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(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, 합천군, 의령군, 진주시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)의 순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·군수가 역임한다.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.
④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차 순위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남부내륙철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9조 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② 정기회의는 반기별(년2회)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하여야 한다.
④ 회원(자치단체장)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원을 대리하는 자(부단체장)가 참석할 수 있다.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회의는 (북쪽/남쪽)으로부터 통과 노선 시·군 순에 의거 개최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남부내륙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,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의회 운영비)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“남부내륙철도추진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규정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 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 (보칙)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동부담금 집행 규정 폐지

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
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
[성주군 고시 제2016-74호 2016. 12. 15]

제1조(통칙) 남부내륙철도추진 시·군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회원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금 집행에 관하여 협의회 운영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(공동부담금 확보 등) ①협의회 운영규약 제9조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회의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회원 지자체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행정협의회 구좌에 당해 회계연도 1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③협의회 회장은 비영리 법인으로 행정협의회장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공동부담금 입·출금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.

제3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부담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공동부담금 관리관 :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본 사업 관련 과장
2. 지출원 :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본 사업관련 담당
3. 수입금 출납원 :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본 사업관련 담당

제4조(공동부담금의 지출)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9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경비와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5조(공동부담금의 집행) 협의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결산보고)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는 당해 회계연도 정기총회 시 회원 지자체에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